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2. 29.(수) 석간 *인터넷 2021. 12. 29.(수) 09:00 이후 / 총 10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과 장 손필훈 서기관 최재윤 사무관 김용욱	044-202-8804 044-202-8811 044-202-8812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1,243개 사업장 명단 공표

▸안경덕 장관,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**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점검**하고, **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**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안경덕)는 **산업안전보건법***(이하, '산안법')에 따라 **중대재해 발생** 등 **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**를 **위반**한 **사업장 명단**을 **공표**했다.

* 개정 전 산안법 제9조의2 제1항: "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**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** 또는 **그 순위** 등을 **공표**하여야 한다."

○ **공표대상**은 ▲**중대재해 발생** 등으로 **산업안전감독관**이 **수사·송치**하여 법원에서 **형이 확정**된 **사업장**, ▲**산재 은폐** 또는 **미보고**로 **과태료**가 **부과**된 사업장, ▲**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** 등 **1,243개소**이다.

○ 올해 **공표 사업장**은 **중대재해 발생 사업장**(671 → 576개소, ▵**95개소**), **산재 미보고 사업장**(116 → 59개소, ▵**57개소**) 등이 **감소**하여 **전년도 1,470개소**에 비해 **227개소**가 **감소**하였다.

□ **이번**에 **공표**하는 **사업장**(현장)은 **총 1,243개소**이며, **세부 기준**(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*)별 **주요 현황**은 아래와 같다.

*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'21년 명단 공표까지 개정 전 규정을 적용

❶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⇨ 576개소

❖ **(제1항 제1호) 중대재해*가 발생한 사업장**으로서 **연간 재해율**이 **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**인 사업장

*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

○ **576개 공표 사업장** 중 **건설업**이 **절반 이상**(339개소, 58.9%), **50인 미만**(484개소, 84%)이 **대부분**이며,

- **이번**에 **공표**되는 **주요 사업장**은 건설업 **지에스건설**(주), **롯데건설**(주), **동부건설**(주), **삼성물산주식회사**, 제조업 **금호타이어**(주), **효성중공업**(주) 등이다.

❷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⇨ 17개소

❖ **(제1항 제2호)** 산업재해로 **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** 발생한 사업장

○ **17개 공표 사업장** 중 **사망재해**가 **많은 사업장**은 ㈜**한화 대전사업장**(5명 사망, '18년), **대림종합건설**(3명 사망, '17년), **SK하이닉스**(주)(3명 사망, '15년), **엘지디스플레이**(주) **파주사업장**(3명 사망, '15년) 등이다.

* '20년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'21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대상에 포함

❸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⇨ 산재은폐 23개소, 산재미보고 59개소

❖ **(제1항 제2의3호)**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**산업재해 발생 사실**을 **은폐**한 사업장

(제1항 제3호)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**산업재해의 발생 보고**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**미 보고한 사업장**

○ **산재은폐**로 **처벌**되어 **공표**되는 **사업장**은 **동남정밀**(주), **에스티엠 주식회사**, **주식회사 동우테크** 등 **23개소**이며,

- **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**에 **지방고용노동관서**에 **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**을 받은 **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**은 **삼성전자㈜광주사업장**, **한국지엠㈜창원공장** 등 **59개소**이다.

❹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⇨ 11개소

❖ **(제1항 제4호)**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**중대산업사고**가 발생한 사업장

○ **11개 공표 사업장** 대부분 **화재** 및 **폭발사고**(9개소, 81.8%)이며, **사고 피해**가 **큰 사업장**은 ㈜**한화 대전사업장**(5명 사망, '18년), ㈜**에스에이치 에너지화학**(1명 사망 + 2명 부상, '20년) 등이다.

○ 또한, **중대재해**(1호, 2호) 및 **중대산업사고**(4호) **공표 사업장** 중 **수급인 근로자**에 대한 **안전보건조치 의무**(산안법 제63조, 舊 제29조제3항) **위반**으로 인해 **처벌**받은 **원청 337개소***의 **명단**도 **함께 공표**했다.

* [건설] 에스케이에코플랜트(주), ㈜호반산업 등 [제조] 쌍용씨앤이(주)동해공장 등

□ 아울러, **'18년**부터 **원청**의 **산재예방 책임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**시행 중**인 **'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'**에 따라, **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**이 **높은 원청 1개소**(동국제강(주)부산공장)의 **명단**도 공표했다.

[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]

- **(법적근거)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**(개정 전, 법률14788호)
- **(적용대상)** 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
- **(공표기준) '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'**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**높은 사업장**

□ **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**은

○ "**산업안전보건법**에 따라 **공표 대상**이 된 **사업장**과 **임원에** 대해서는 향후 **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**하고,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**최고경영자**(CEO)**의 안전의식 제고**를 위한 **교육**도 **실시**할 예정"이며,

○ "**내년**부터는 **중대재해처벌법 시행**('22.1.27.)에 따라 **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**는 **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**이므로,

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**가이드북**과 업종별 **안전보건 자율점검표***를 **활용**하여 **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**를 **점검**하고, **현장**에 **안전문화**가 **정착**될 수 있도록 **최선을 다해 주실 것"**을 **강력히 당부**했다.

* (9월) 50~299인 제조업 자율점검표 → (10월)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→ (11월) 폐기물처리업,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 → (12월) 건설업, 도·소매업, 음식점업 자율점검표

[붙임1] **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**

[붙임2] **세부 기준별 공표 사업장 주요 현황**

* 전체 **공표명단**은 **고용노동부 누리집**(www.moel.go.kr)에서 **확인 가능**
↳ 고용노동부 누리집 : 「정보공개 - 사전정보공표목록 - 산재예방/산재보상」 게시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용욱 사무관(☎044-202-8812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

□ **(목적)** 산업재해 **예방 조치 의무 위반** 및 불이행에 따라 **중대재해** 등이 **발생**한 **사업장 명단**을 **공표** → **경각심 제고** 등 **사업주 의무이행** 유도

[舊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]

❖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**산업재해 발생건수,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**(이하 "산업재해 발생건수 등" 이라 한다)**을 공표**하여야 한다.

□ **(대상)**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* 중 **형**(刑)이 **확정**된 **사업장**

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0256호)」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부개정 되기 전의 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 적용

[공표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(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)]

①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**사업장**

1호. **(중대재해) 중대재해**가 **발생**한 사업장으로서 **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**인 사업장

2호. **(사망자 2명 이상) 연간 사망재해자**가 **2명 이상** 발생한 사업장

2의2호. **(사망만인율)** 사망만인율이 **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상**인 사업장

2의3호. **(산재은폐)**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**산업재해 발생 사실**을 **은폐**한 사업장

3호. **(산재미보고)**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**산업재해 발생 미보고** 사업장

4호. **(중대산업사고) 중대산업사고**가 **발생**한 사업장

②항 (원청도 함께 공표) 도급인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(도급 시 안전보건조치)을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, 수급인의 사업장이 **1호, 2호, 2의2호, 4호**에 해당하게 되면 **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**

③항 (원·하청 통합공표) 도급인이 사용하는 **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**인 **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** 중 **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**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산출한 **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**을 **공표**

□ **(향후 조치) 공표**된 **사업장**은 **3년간**('24년까지) **정부포상**에서 **제외**

○ **지방청별**로 **공표 사업장**에 대해 **CEO 안전교육** 실시

붙임 2 세부 기준별 공표 사업장 주요 현황

[제1항 제1호]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

❖ **(대상) 중대재해*가 발생한 사업장**으로서 **연간 재해율**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

*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

○ **중대재해 발생** 등으로 인한 **공표대상 사업장**은 **총 576개소**

- **(중대재해자 수) 중대재해 1명 발생 사업장**이 **521개소**로 **90.4%** 수준

구 분	계	1명	2명	3명	4명	5명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76 (100.0)	521 (90.4)	39 (6.8)	9 (1.6)	5 (0.9)	2 (0.3)

- **(업종별) 절반 이상**(339개소, 58.9%)이 **건설업**이며, 이 외에는 **기계기구·금속제조업**(14.2%), **화학·고무제품제조업**(4.3%), **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**(3.5%) 順

구 분	계	건설업	기계기구·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	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	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	농업	도소매·음식·숙박업	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	기 타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76 (100.0)	339 (58.9)	82 (14.2)	25 (4.3)	20 (3.5)	11 (1.8)	10 (1.7)	10 (1.7)	79 (13.7)

- **(규모별) 50인 미만** 사업장(484개소, 84%)이 **대부분**이며, 100~299인(7.3%), 50~99인(4.0%) 順

구 분	계	50인 미만	50인 ~99인	100인 ~299인	300인 ~499인	500인 ~999인	1,0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76 (100.0)	484 (84.0)	23 (4.0)	42 (7.3)	8 (1.4)	11 (1.9)	8 (1.4)

[제1항 제2호]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

❖ **(대상)** 산업재해로 **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** 발생한 사업장

○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으로 인한 **공표대상 사업장**은 **총 17개소**

- **사망자 2명 발생** 사업장(10개소, 58.8%)이 **절반 이상**이며, **건설업**이 **70% 이상**을 **차지**(12개소, 70.6%)

연번	사업장명 (현장명)	업종	사망자 수	규모
1	연산알미늄	건설업	2명	50인 미만
2	㈜성산레텍	건설업	2명	50인 미만
3	삼인산업(주)	건설업	2명	50인 미만
4	주식회사거양	건설업	2명	50인 미만
5	일성건설(주)(원청) 은산토건(주)(하청)	건설업	2명	100~299인
6	진종합건설 주식회사	건설업	2명	50인 미만
7	수성수산	식료품 제조업	4명	50인 미만
8	㈜한화대전사업장	화학제품 제조업	5명	500~999인
9	세인이앤티㈜(하청) (주)선양엔텍(하청)(구)	위생및유사 서비스업	3명	50인 미만
10	에이치오건설(주)(원청) 주식회사 아성산업개발(하청)	건설업	2명	50~99인
11	㈜대림종합건설(원청) 맹호타워, 주식회사 선흥기업(하청)	건설업	3명	100~299인
12	한국테크라인(주)	건설업	2명	50인 미만
13	㈜태영건설(원청) 상하건설주식회사(하청)	건설업	2명	100~299인
14	개인사업자 오희문 (의정부민락2 B-9BL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)	건설업	3명	100~299인
15	엘지디스플레이(주)파주사업장(원청) ㈜아바코(하청) ㈜코아백(하청)	전자제품 제조업	3명	1,000명 이상
16	SK하이닉스(주)(원청) ㈜듀어코리아(하청)	전자제품 제조업	3명	1,000명 이상
17	두산건설(주)(원청) ㈜국원토건(하청) 우상건설(주)(하청)	건설업	2명	500~999인

[제1항 제2의2호]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

❖ **(대상)**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**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**

○ **사망만인율**이 **동종 평균 이상**인 **공표대상 사업장**은 **총 556개소**

- **중대재해 발생** 등(제1항 제1호) **공표대상**과 **중복** 사업장은 **544개소**

- **(업종별) 절반 이상**(325개소, 58.5%)이 **건설업**이며, 이 외에는 **기계기구·금속제조업**(14.2%), **화학·고무제품제조업**(4.1%), **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**(3.5%) 順

구 분	계	건설업	기계기구·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	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농업	도소매·음식·숙박업	수제품및 기타제품 제조업	기 타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56 (100.0)	325 (58.5)	79 (14.2)	23 (4.1)	18 (3.2)	11 (2.0)	9 (1.6)	9 (1.6)	82 (14.7)

- **(규모별) 50인 미만** 사업장(457개소, 81.9%)이 **대부분**이며, 100~299인(9.0%), 50~99인(4.1%), 500인~999인(1.8%) 順

구 분	계	50인미만	50인 ~99인	100인 ~299인	300인 ~499인	500인 ~999인	1,0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56 (100.0)	457 (82.2)	23 (4.1)	50 (9.0)	9 (1.6)	10 (1.8)	7 (1.3)

[제1항 제2의3호] 산재은폐 사업장

❖ **(대상)**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**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**

○ **산재은폐**로 인한 **공표 대상 사업장**은 **총 23개소**

- **(업종별)** 건설업(8개소, 34.8%),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(6개소, 26.1%) 順

구 분	계	건설업	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선박건조 및 수리업	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	기타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23 (100.0)	8 (34.8)	6 (26.1)	2 (8.7)	2 (8.7)	5 (21.7)

- **(규모별) 50인 미만 사업장**이 **70% 이상** 차지(17개소, 73.0%)

구 분	계	5인 미만	5인~49인	50인~99인	100인 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23 (100.0)	5 (21.8)	12 (52.2)	4 (17.4)	2 (8.7)

[제1항 제3호] 산재미보고 사업장

❖ **(대상)**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**산업재해의 발생 보고**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**미 보고한 사업장**

○ **산재미보고**로 인한 **공표 대상 사업장**은 **총 59개소**

- **(위반횟수별) 위반 2회 사업장**이 **70%** 이상 차지(42개소, 71.2%)

구 분	계	2회	3회	4회	5회 이상
사업장 수(점유율, %)	59(100.0)	42(71.2)	8(13.6)	3(5.1)	6(10.2)

- **(업종별)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**(18.6%), 건설업(10.2%), 식료품제조업(10.2%) 順

구 분	계	기계기구·금속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건설업	식료품 제조업	전문보건·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	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	그 외 업종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9 (100.0)	14 (23.7)	6 (10.2)	6 (10.2)	4 (6.8)	4 (6.8)	4 (6.8)	21 (35.6)

- **(규모별) 50인 미만 사업장**이 **절반 이상** 차지(30개소, 50.8%)

구 분	계	50인미만	50인 ~99인	100인 ~299인	300인 ~499인	500인 ~999인	1,000인이상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59 (100.0)	30 (50.8)	6 (10.2)	13 (22.0)	4 (6.8)	3 (5.1)	3 (5.1)

[제1항 제4호]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

❖ **(대상)**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**중대산업사고**가 발생한 사업장

○ **공표대상 사업장**은 **총 11개소**이며, **화재** 및 **폭발 사고**가 **대부분** (9개소, 81.8%)

연번	사업장명	재해 발생일	사고유형	피해정도(명)	
				사망	부상
1	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(유)	'20.2.2	화재	-	1
2	하이텍팜㈜	'20.2.24	폭발	-	2
3	롯데정밀화학㈜	'20.3.6	누출	-	1
4	㈜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	'20.3.6	폭발	1	2
5	하나제약㈜	'20.3.24	화재	-	1
6	코스모화학㈜	'20.4.2	누출	-	2
7	송원산업㈜	'20.6.15	화재	-	1
8	엘에스니꼬동제련㈜	'20.7.1	화재	-	1
9	(원청)코오롱인더스트리㈜울산공장 (하청)미래방재㈜	'19.10.30	폭발	-	2
10	다이토키스코㈜	'19.12.12	화재	-	2
11	㈜한화 대전사업장	'18.5.29	폭발·화재	5	4

[제2항] 원청도 함께 공표

❖ **(대상)** 수급인의 사업장이 1호, 2호, 2의2호, 4호에 각 해당할 때, 도급인 사업주가 제29조제3항(도급시 안전·보건조치)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재해를 입은 경우 **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**

○ **산안법 제63조**(舊 제29조제3항) 위반으로 **원청도 함께 공표**되는 경우는 **총 377개소**

- **(공표기준별) 대부분 중대재해 발생 등**(제1항 제1호), **사망만인율** (제1항 제2의2호)에 따른 **공표 사업장 원청**이 해당

구 분	계	제1호 (중대재해)	제2호 (사망2명이상)	제2의2호 (사망만인율)	제4호 (중대산업사고)
사업장 수 (점유율, %)	377 (100.0)	186 (49.3)	7 (1.9)	180 (47.7)	4 (1.1)

[제3항] 원 · 하청 통합공표

❖ **(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)** 원·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, 원·하청간 의사소통 부족, 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이 하청의 산재통계도 **통합**적으로 **관리**하도록 한 제도('18년 도입 → '19년부터 공표)

- **(법적근거)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**(개정 전, 법률14788호)
- **(적용대상)** 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
- **(공표기준) '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'**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**높은 사업장**
- **(공표내용)** ① 원청 사업장 정보, ② 원·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(사고사망자 수, 만인율), ③ 하청업체의 사고사망재해 합계 및 만인율

○ **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원청 공표사업장은 1개소** (동국제강(주)부산공장, 기계기구·금속제조업, 근로자 수 801명)

사업장명	사업장 소재지	사고사망만인율 (‰)			사고사망자 수 (명)			근로자 수 (명)		
		원하청 통합	원청	하청	원하청 통합	원청	하청	원하청 통합	원청	하청
동국제강(주) 부산공장	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02	6.79	0.00	14.9	1	0	1	1,473	801	672